

건축설계감리용역사 제도개선에 따른 제안

Improvement of Design and Supervision Corps. System

韓鍾彦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by Han, Chong-Un

■ 건축사 사무소의 기술축적과 대형화

현재 우리 건축사 사무소는 그 형태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단독과 종합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단독사무소에 대하여는 구태여 논하지 않겠다. 아뜨리에 식으로 혼자서도 자유롭게 작품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사무소의 경우는 좀 다르다. 당초 종합사무소의 시행동기나 의미가 건축사 3인 이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자는 뜻이였는데, 실은 원래의 의미와 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단독사무소의 집합에 그치고 말았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일부 국내 20~30개사는 법인으로 하여 한 조직으로서 명실공히 종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는 법인이면서도 형태만 법인(유사법인)이지, 실제경영은 내적으로 달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4~5인의 공동대표가 그 실례인 것이다. 문제는 사무소형태가 어찌나에 큰 비중이 있는게 아니다.

먼저 건물의 대형화와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축적이 문제이다. 단독과 유사한 종합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자연히 영세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술인력의 확보와 고급인력, 나아가서 건축사 자격을 가진 고급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일할 자리도 없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사 자격을 가진 젊고 유능한 건축사들은 대부분이 건축사 자격증이 사무소 개업증인 것으로 착각하고 너도나도 개업을 하게 되므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더더군다나 건축사는 고용이 될 수 없다는 법의 조항과 (사법 23조, 25조의) 종합건축사의 등록요건에 등록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더욱 힘을 분산시키며 영세성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도 한 조직내에서 법인으로 완벽한 팀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건축사법 때문에 등록 건축사이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도서신고나 외부 활동에서는 두얼굴의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내부 조직에서는 이사이며 외부에서는 소장이다. 이런 모순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모순을 하루빨리 없애려면 법인에서는 등록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3~5인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종합으로 인정하는 법이 되어야 하며, 법인(회사)이 대표권을 행사하며 회원자격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유능한 건축사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고급 기술자와 유능한 건축사가 한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기술축적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한 조직내에서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장, 과장, 혹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유능한 건축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울 뿐이며 이런 집단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멀리서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이번 개정된 기술사법과 엔지니어링 진흥법에서 똑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건축사법을 보면 건축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그责任을 누구도 승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이런 피해를 막는 길은 법인사업 것이다. 최근에 와서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하여 용역기간도 4~5년이상, 공사기간도 4~5년 되는 경우가 하다하다. 이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소규모 건물에서도 수차 발생하여 어물적거려 처리한 것을 보아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는 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쉽게 이해될 줄로 생각된다. 다시말해 건축사 단위가 아닌 회원사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 건축설계 용역사의 공제조합 설립의 시급성

건축설계, 감리용역 업무 자체가 전문기술과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누구나의 상식이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의 뒤에는 고의아닌 실수로 인한 하자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전문단체에서는 단체적으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거나 유지중에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기술진흥 육성법 (1992년 11월 25일 통과)에서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건축사들은 이점에 대해서 도대체 무관심이다. 의당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 회원사가 파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 점이 바로 시급한 사항인데도 우리 협회나 정부에서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만 풍성힐뿐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 현재 계약보증, 이행증 보증, 현금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여러가지 건축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제조합설립이 하루가 시급한 형편임에도 우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복지회비, 연금회비만 회원에게 막중한

“

현재도 한 조직내에서 법인으로 완벽한 팀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건축사법 때문에 등록 건축사이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도서신고나 외부 활동에서는 두얼굴의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내부조직에서는 이사이며 외부에서는 소장이다. 이런 모순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모순을 하루빨리 없애려면 법인에서는 등록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3~5인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종합으로 인정하는 법이 되어야 하며, 법인(회사)이 대표권을 행사하며 회원자격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유능한 건축사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고급 기술자와 유능한 건축사가 조직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기술축적은 자연히 이룩되는 것이다.

”

부담을 주고있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건설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500호 제13조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설립)을 보면, 제13조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설립등

①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응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10 생략

③ 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자기보호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을 위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엉뚱한 생각만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 협회 조직의 재편 (이원화)의 필요성

우리 건축사협회는 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 개인단위의 협회이다. 그러나, 본필자는 이 점이 잘못된 조직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로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모든 건축사는 전원 건축사협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무소 개설자는 사무소 개설형태에 따라 단독은 단독사무소협회, 법인사는 법인사협회, 감리 용역등록사는 감리협회 등 전문화 다양화되어야 하며 모체는 건축사 협회 (전자격 건축사 수용)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예도 그려려니와 이번 법의 통과를 본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법률 제4500호, 4501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조직의 특수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영역을 유지하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가며 국제경쟁력도 키워 갈 수

있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보다 진요한 것은 계층별 조직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만이 우리 건축계가 보다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언

결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번 개정된 기술용역 육성법개정이유를 전재해 보면, 개방화, 국제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며, 엔지니어링 활동관련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우리 건축사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단독 사무소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조직을 활용하여 단체교섭을 해야 할 것이며, 법인종합사는 회원사중심으로 협력을 구성하여 각기 자기기능에 알맞는 역할분담을 하여 건축계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희 회장도 선거공약에서 계층간에 조화를 약속한 바 있다.

대형법인용역사는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축적과 아울러 UR, 종합건설업법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등 엔지니어링 진흥법과 유사한 특혜를 받아야 되며, 아울러 공제조합설립이 될 수 있도록 시급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우리들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당국에서는 국제경쟁력향상, UR에 대처한 기술개발등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210개사에 달하는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조직을 보완하여 단일조직으로서의 법인형태가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건축사협회 회원은 필자의 제언이 협회의 분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문화의 창달 및 국제경쟁력을 기르는 길을 찾으려는 고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